

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

〈사건의 개요〉

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,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00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운영의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하고,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할부대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.

이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.

〈사건의 쟁점〉

자동차 매수인이 이전등록 전 매도인으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, 이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

원심의 판단

- 1심: 유죄(징역 8월)
- 원심: 항소기각

즉, 원심은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

대법원의 판단

1.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,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,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,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

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1도3042 판결 참조).

2.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대하여 『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,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18641 판결,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).

결론

1. 원심은 관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시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,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'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'를 전제로 한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2.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관시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,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,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.